

#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년 10월 22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0. 22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건강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
- 위탁기간: 3년(2020. 01. 01. ~2022. 12. 31.)
- ※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필요시 민간위탁기간 단축 운영 가능
- 위탁운영 선정사유: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 도래

## 2) 추진일정

- 2019. 11~12월: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·선정
- 2019. 12월: 위탁협약 체결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치매관리법」 제3조 (국가등의 의무) 및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, 제20조(위임과 위탁)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: 2020 회계연도 예산 반영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이 동의안은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치매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전문 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.

- 이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춘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사후 지도·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**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7. 토론요지 : 생략**

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붙임 관계법령 1부.

**□ 치매관리법**
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

-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**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"치매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  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  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  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  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  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- 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
-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